

[별첨 1] 자율안전확인기준-부속서 36-완구 부(part)별 주요 개정내용 요약표

부	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-	-	- 목차 추가	- 완구기준에서 필요한 분야 및 항목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전체 구성 체계를 목록화 함.
	- 서문 · 충전완구는 36개월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.	- 적용범위 · 잡고 꺾안을 수 있도록 의도된 단순한 형태를 가진 충전완구는 36개월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.	- 용어의 변경 · 작고 복잡한 형상을 가진 충전완구의 사용연령 현실화를 위해 EN 71-1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
적용범위	-완구적용제외 제품 · 26개 항목	-완구적용제외 제품 (28개 항목) 1)삭제항목 -실제 무기복제품 항목 삭제 2)추가항목 -어린이용책자(놀이기능 추가된 것 제외) -킥보드(베어링 사용하지 않은 것 제외) -헬멧,물안경,선글라스 및 기타 눈보호구	1)모형 조립품, 취미용품에 해당되어 중복되므로 삭제 2)완구 적용제외로 처리된 민원 내용 반영 및 별도 안전기준에서 관리하는 제품 제외명시
제1부 일반 - 완구의 종류, 검사방법, 표시사항	-제1부 일반 - 용어의 정의, 검사방법, 표시사항	-제1부 일반 - 완구의 종류, 검사방법, 표시사항	-개정내용 반영하여 제목변경
	3. 용어 및 정의	삭제	-기준내용상 제2부의 용어 및 정의에 해당되므로 제2부 3.항으로 이동

부	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		3. 완구의 종류 ① 작동성에 따른 구분 ② 사용연령에 따른 구분 ③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과 예시	-검사방법에서 완구 모델구분의 기준이 되는 종류 구분 추가 <유럽연합 완구의 분류-지침(CR 14379 2002) 참고>
	4. 포장	삭제	제2부 3.10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
	6. 표시	6. 표시 -안전표시는 한글로 표시 문구추가 -완구스쿠터, 자석, 자성/전기실험세트 항목추가	-완구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안전표시는 한글로 표시하도록 명시 -ISO 8124-1 개정내용 반영
제2부 기계적·물리적 특성	2. 관련규격 -8개 항목	2. 관련규격 -9개 항목 · KS I ISO 3746, 61672 추가 · ISO 7619 삭제	-ISO 8124-1 개정내용 반영
	-	3. 용어 및 정의 - 내용변경 및 추가(ISO 부합화) - 내용추가 · 흡입컵, 자성부품, 자성/전기적 실험세트, 완구의 전기 혹은 전기 부품에서의 기능성 자석	-기준 내용상 제1부 3.항에서 이동 -ISO 8124-1 개정내용 반영 -EN 71-1 내용반영
	3. 안전요건	4. 안전요건 4.5.8 반구형태의 완구	-원형이거나 타원형 형태를 가진 완구의 삼킴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ISO, EN, ASTM을 반영하여 내용추가

부	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(제2부 기계적·물리적 특성)	-	4.8.2 핸들바 및 기타 튜브	-핸들바 사용안정성을 위한 그립 요구사항과 튜브의 끝부분 보호캡 요구사항 추가 (ISO 8124-1 개정내용 반영)
	-	4.29 흡입 컵	-흡입 컵 일명 흡착판의 사용 위험성으로 인한 안전요건 추가(EN 71-1 내용 반영)
	-	4.30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	-완구기준 부록B의 내용을 기준 사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본문으로 이동하고, 최근 개정된 ISO 8124-1 내용 반영하여 개정
	-	4.31 완구 스쿠터	-완구 스쿠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ISO 8124-1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요건 추가
	-	4.32 자석	-유해한 자석을 포함한 완구 사용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자석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EN 71-1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석에 대한 안전요건 추가

부	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(제2부 기계적·물리적 특성)	부록 B 음향완구	삭제	-완구기준 구성의 편의성과 ISO 8124-1와 부합화를 위해 부록에서 본문으로 이동
	-	부록 B 완구 총기류 표시	-완구 총기류에 안전성을 위하여 ISO 8124-1 개정내용 반영하여 내용추가
	부록 D 이론적 해석 D1 ~ D43 (43 항목)	부록 D 이론적 해석 D1 ~ D47 (47 항목) · D44 반구형태의 완구 · D45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 가 · D46 완구스쿠터 · D47 자석	-본문 내용의 추가로 인한 이론적 해석 내용추가 (ISO 8124-1 및 EN 71-1 내용반영)
제3부 가연성	3. 용어 및 정의 -7개 항목	3. 용어 및 정의 -12개 항목 · 용융물, 인화성기체, 인화성액체, 인화성이 높은 액체, 인화성이 높은 고체	-ISO 8124-2 개정내용 반영하여 5개 항목 추가
	4.2 수염,콧수염,가발 및 가면과 머리나 얼굴에 착용하는 털이 있는 제품 또는 부착재료	4.2 머리에 쓰는 완구 4.2.5 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 4.3 가장복 뒤집어 사용 가능하면 양쪽면 모두 시험한다는 문구 등 추가 4.4 완구텐트, 놀이용 터널 등 섬유 및 비닐 같은 유연한 재질은 포함되나 단단한 재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추가	-머리에 쓰는 완구의 밑으로 드리워진 부분에 대한 안전요건 추가 및 ISO 8124-2 개정내용 반영하여 일부내용 수정 및 추가
	-	부록 A 배경 및 이론적 해석 추가	-ISO 8124-2 개정내용 반영하여 가연성 안전요건에 대한 배경 및 이론적해석 추가

부	현 행	개 정 (안)	개 정 사유
제4부 유해원 소 용출	-	비고사항 추가 -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음식, 입에 접촉하는 완구 시험 적용 - 권장 나이 표시나 특정한 나이 구분과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액체, 반죽, 젤 시험 적용	-입에 접촉하는 완구 및 액체 완구는 나이 구분 없이 적용 한다는 내용추가 (ISO 8124-3 개정내용 반영)
		4.3.4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접착제 중 네일아트 접착제와 같이 피부접촉성 접착제의 폼알데하이드 의 양이 50 mg/kg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	시판품 조사결과(500 mg/kg 이상)의 반영
	8.7 자국을 남기는 물질 그리스, 기름, 왁스 등의 제거 용매로 1,1,1 트리클 로로에탄 사용토록 규정	8.7 자국을 남기는 물질 그리스, 기름, 왁스 등의 제거 용매로 1,1,1트리클 로로에탄에서 n-heptane 사용 규정 변경	- ISO 8124-3 반영
제5부 실내/실 외 가정용 그 네, 미끄럼틀, 및 활동완구	3. 용어 및 정의(12 항 목)	3. 용어 및 정의(17 항목) · 부착 미끄럼틀, 충격구역 등 추가	-ISO 8124-4 반영
	4. 안전요건 4.1.4 돌출부	4. 안전요건 4.1.4 돌출부 - 돌출부를 세분화(추가) - 일반, 모든 돌출부, 수직 돌출부, 움직이는 기구, 미끄럼틀로 구분	- 돌출부에 의한 위험성을 고 려하여 안전요건 세분화 (ISO 8124-4 개정내용 반영)
	4.1.5 등반로프	4.1.5 등반로프 - 오르기 로프와 그네 로프, 체인, 케이블 세분화 - 그네로프, 체인, 케이블 추가	-로프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요건 세분화 (ISO 8124-4 개정내용 반영)
	-	4.1.6 열린 관 - 열린관은 부드러운 마무리와 단단한 끼워 맞춤이 될 캡이 제공	-열린관에 의한 위험성을 고 려하여 안전요건 추가 (ISO 8124-4 개정내용 반영)

부	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(제5부 실내/실외 가정용 그네, 미끄럼틀, 및 활동완구)	4.2 울타리, 사다리 등	4.2 울타리 - 울타리 항목 분리하여 울타리높이세분화	- 완구의 사용 안전을 위해 높이에 따른 울타리 높이 안전요건 세분화 (ISO 8124-4 개정내용 반영)
	4.2.2 미끄럼틀을 제외한 완구로의 접근수단	4.3 가로장 사다리와 발판 사다리, 계단 - 사다리, 계단 항목 분리 요건 강화	- 완구의 사용 안전을 위해 사다리와 계단의 안전요건 강화 (ISO 8124-4 개정내용 반영)
	4.5.3 출발지점, 활강지점 및 도착지점	4.6.3 출발지점, 활강지점 및 도착지점 - 활강지점에서 수평선까지 기울기 60°넘지 않아야 하는 규정 추가	-미끄럼틀의 사용 안전을 위해 최대 기울기 안전요건 추가 (ISO 8124-4 개정내용 반영)
	4.6.3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그네	4.7.3 36개월 이하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된 그네 4.7.3.2 대들보가 없는 유아그네	-36개월 이하 어린이를 위한 그네 안전요건 수정 및 유아그네의 안전요건 추가 (ISO 8124-4 개정내용 반영)
	6.1.4 그네 및 대들보를 갖고 있는 기타 활동완구의 안전성	6.1.4 그네 및 대들보를 갖고 있는 다른 활동완구의 안전성 -그네 높이 및 사용자수에 따른 시험방법 구분	-그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네 높이와 사용자수에 따라 시험방법 구분 내용 추가(ISO 8124-4 개정내용 반영)
	-	6.1.5 유아그네의 안정성	-유아그네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진자 시험방법 추가(ISO 8124-4 개정내용 반영)
	-	6.7 돌출부 시험	-돌출부에 의한 위험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추가(ISO 8124-4 개정내용 반영)
	-	부록 B - 놀이기구 표면재를 위한 소비자안내서 추가	-지면으로의 낙하로 인한 위험성을 대비한 놀이터 표면재에 대하여 소비자를 위한 안내정보 추가(ISO 8124-4 개정내용 반영)

부	현 행	개 정 (안)	개 정 사유
제6부 화학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실험 세트	<없음>	< 신설 > 화학물질 및 장비 요건 규정(제정) 1. 화학물질 - 허용된 화학물질, 조합제 54물질 규정 - 허용된 지시약 10물질 규정 - 세트당 사용 가능한 허용량 규정 - 허용되지 않는 시약 4물질 규정 2. 장비 1) 화학실험세트가 갖추어야 할 사항 규정 - 사용설명서, 경고와 응급조치 정보, 보안경 요건 2) 보조실험세트가 갖추어야 할 사항 규정 - 경고와 응급조치 정보 요건 3) 용기 및 유리기구 요건 규정 - 시험관 및 유리기구는 내열성 유리로 제조 - 시약용기는 내충격성 가질 것 - 마개는 잘 열리지 않을 것 - 액체 옮기는 장비는 입으로 흡입할 수 없는 기계적 수단일 것 - 보안경은 투명재료로 균열 생기지 않을 것	EN 71-4 부합화

부	현 행	개 정 (안)	개 정 사유
제7부 실험세트 이외 화학 완구류 (세트)	<없음>	< 신설 > 허용된 화학물질, 조합제 외에 표기, 경고, 안전규칙, 사용지침, 응급처치 정보 등의 요건 규정 - 소성 석고 성형세트 - 주의 및 안전규칙 표기토록 규정 - 소형공장 세트에 공급된 세라믹재료와 자기질 에니멜 재료 - 허용된 화학조합제(12종) 규정 - 경고 및 안전규칙 표기토록 규정 - 오븐경화 가소처리 PVC 모델링 점토 세트 - 허용된 가소제(6종) 규정 - 염화비닐단량체 함량 규정 - 허용된 최대 온도와 시간으로 가열되는 동안 배출한도(3종) 규정 - 경고, 주의 및 안전규칙 표기토록 규정 - 플라스틱 성형 세트 - 단량체 함량이 500 mg/kg이하인 폴리스티렌 포함토록 규정 - 경고, 주의 및 안전규칙 표기토록 규정 - 사진현상 세트 - 허용된 화학물질 및 조합제(12종) 규정 - 경고, 주의 및 안전규칙 표기토록 규정	EN 71-4 부합화

부	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(제7부 실험세트 이외 화학완구류 (세트))	<없음>	6. 모형세트와 공급되었거나 여기에 권고된 접착제, 페인트, 래커, 바니시, 시너, 세정제(용제) 1) 접착제 ① 수성접착제 - 허용된 수성접착제와 수성도료/래커 기초재료 (5종) 규정 - 허용된 종이와 나무용 접착제 특수재료(4종) 규정 - 허용된 종이와 나무용 접착제 특수첨가제(12 종) 규정 - 종이용 순간접착제 특수재료(1종) 규정 - 경고 표기토록 규정 ② 용제형 접착제 - 허용된 가소제(7종) 규정 - 개질제 함량 규정 - 허용된 다목적접착제 기초재료(4종) 규정 - 허용된 접촉접착제 기초재료(3종) 규정 - 허용된 특수접착제 기초재료(5종) 규정 - 허용된 용제(16종) 규정 - 경고, 주의 및 안전규칙 표기토록 규정	

부	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(제7부 실험세트 이외 화학완구류 (세트))	<없음>	2) 수성페인트와 래커 - 허용된 유기용제와 도막형성제(7종) 규정 - 적용한 재료는 EN71-3 표 한계치를 준수할 것 - 경고, 주의 및 안전규칙 표기토록 규정 3) 용제페인트, 래커, 시너, 세정제 - 허용된 기초재료(3종)규정 - 허용된 용제(9종) 규정 - 적용한 재료는 EN71-3 표 한계치를 할 것 - 경고, 주의 및 안전규칙 표기토록 규정	
제8부 핑거페인트	<없음>	허용된 착색제, 보존제, 조합제, 결합제, 증량제, 습윤제, 계면활성제 외에 유해원소 용출 한계치, 일차방향족아민 한계치 등 규정 1. 착색제 - 허용된 착색제(126종) 규정 2. 보존제 - 허용된 착색제(37종) 규정 3. 유해원소 용출 한계치 규정 - EN 71-3에 따름	최신 EN 71-7 부합화 추가

부	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(제8부 핑거페인트)	<없음>	4. 일차방향족 아민 - 사용 금지된 일차방향족 아민(4종) 및 그 밖의 일차방향족 아민(22종) 한계치 규정 5. 맛과 냄새 - 첨가해야 하는 쓴 맛을 내는 물질(3종) 규정 6. pH - 4 ~ 9 일 것 - 경고, 주의 및 안전규칙 표기토록 규정 7. 결합제, 증량제, 습윤제, 계면활성제 - 허용된 결합제(11종), 증량제(9종), 습윤제(8종), 계면활성제(4종) 규정	
제9부 유기화학물질 - 요구사항	제7부 유기화학물질 - 요구사항	제9부 유기화학물질 - 요구사항 4.3.4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접착제 중 네 일아트접착제와 같이 피부접촉성 접착제의 폼알데하이드의 양이 50 mg/kg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	- 부 번호 순연 - 시판품 조사결과(500 mg/kg 이상)의 반영 - 기타 편집상의 오류 수정
제10부 유기화학물질 - 시료의 준비와 추출 제11부 유기화학물질 - 분석방법	제8부 유기화학물질 - 시료의 준비와 추출 제9부 유기화학물질 - 분석방법	제10부 유기화학물질 - 시료의 준비와 추출 제11부 유기화학물질 - 분석방법	- 신규 추가되는 규정 삽입에 따른 부번호 순연 - 편집상의 오류 수정 보완